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4. 16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4. 12. 김영미 의원 외 5명
- 나. 회부일자 : 2021. 4. 12.
- 다. 상정일자 : 제24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1. 4. 16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영미 의원

### 가. 제안이유

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, 신규 채용 위축 등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청년 대상 활동비 지급 근거 조항 신설(안 제12조 제3항 및 제4항)

### 3. 검토보고 (조광현 전문위원)

- 「청년기본법」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,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 
또한,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3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- 2020년 말 기준 통계청 발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국 실업자는 110만 8천명으로 전년도 대비 4.2% 증가하였고, 이 중 서울은 24만 1천명으로 전국의 21.8%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3.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 
실업률을 보면 전국 4.0%, 서울 4.6%로 서울지역의 실업률이 높았으며, 특히 청년실업률을 보면 전국 8.2%로 전년도 대비 1.1% 증가하였고, 서울은 9.1%로 전년도 대비 2.5% 증가하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〈 표: 서울지역 고용동향<sup>1)</sup>〉

	전 국	서 울 (전년대비)
<b>전체 인구</b> (주민등록)	5,182만 9천명 · 2만 1천명 감소(0.0%↓)	966만 8천명(전국의 18.7%) · 6만 1천명 감소(0.6%↓)
<b>15세이상 인구</b>	4,478만 5천명 · 28만 1천명 증가(0.6%↑)	851만 6천명(전국의 19.0%) · 3만 8천명 증가(0.4%↑)
<b>경제활동 인구</b>	2,801만 2천명 · 17만 4천명 감소(0.6%↓)	529만 3천명(전국의 18.9%) · 2만 7천명 감소(0.5%↓)

1) 서울고용노동청

	-경제활동참가율 62.5%(0.8%p↓) *청년경참율 45.7%(1.8%p↓)	-경제활동참가율 62.1%(0.6%p↓) *청년경참율 51.9%(0.8%p↑)
취업자	2,690만 4천명 · 21만 8천명 감소(0.8%↓)	505만 1천명(전국의 18.8%) · 3만 5천명 감소(0.7%↓)
	-고용률 60.1%(0.8%p↓) *15~64세 고용률 65.9%(0.9%p↓) *청년고용률 42.0%(2.1%p↓)	-고용률 59.3%(0.7%p↓) *15~64세 고용률 65.9%(0.4%p↓) *청년고용률 47.1%(0.6%p↓)
실업자	110만 8천명 · 4만 5천명 증가(4.2%↑)	24만 1천명(전국의 21.8%) · 8천명 증가(3.5%↑)
	-실업률 4.0%(0.2%p↑) *청년실업률 8.2%(1.1%p↑)	-실업률 4.6%(0.2%p↑) *청년실업률 9.1%(2.5%p↑)
비경제 활동인구	1,677만 3천명 · 45만 5천명 증가(2.8%↑)	322만 3천명(전국의 19.2%) · 6만 5천명 증가(2.0%↑)

\*청년층 자료는 '20.4/4분기 기준임

□ 경제활동참가율(%)
인천(64.2) > 대전(63.4) > 경기(62.8) > <b>서울(62.1)</b> > 광주(61.0) > 울산(60.7) > 대구(58.9) > 부산(58.1)
□ 15~64세 고용률(%)
인천(66.9) > 대전(66.2) > <b>서울=경기(65.9)</b> > 광주(63.8) > 대구(63.0) > 부산=울산(62.9)
□ 실업률(%)
<b>서울=인천(4.6)</b> > 대전(4.4) > 부산=울산(4.2) > 경기(4.0) > 대구=광주(3.9)

○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12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, 주요내용은

- 안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
- 안 제4항에서는 예산지원이 가능한 청년활동, 지급대상, 절차 및 방법과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.

○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신규채용 위축 등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